

「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」 적용 제외 신고서

1. 공 사 명 :
2. 계약금액 :
3. 공사기간 :
4. 적용제외 사유

가.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(지급확인제는 적용)

- 1) 선지급 :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()
- 2) 현금지급 : 계좌개설 불가, 일당 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 지급 ()
- 3)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()

나.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

- 1)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(※ 단, 상용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제출) ()
- 2)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()

위와 같이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공사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, 위 '가'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지급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. 만약,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4 년 월 일

계약상대자(또는, 하도급업체) 주 소 :

상 호 :

대표자 :

(인)

귀하

